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814
----------	-------

발의연월일 : 2025. 7. 29.

발 의 자 : 용혜인 · 민병덕 · 정혜경
김준형 · 김선민 · 송옥주
윤종오 · 손 술 · 전종덕
백혜련 · 한창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들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고위공직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해당 공직자가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 동안 직무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해당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했음.

또 보유 주식의 직무 관련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지인에게 보유 주식을 임시로 매각하는 소위 ‘주식 파킹’을 의심받는 고위공직 후보자 사례도 발생함.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 고위공직자가 해당 주식을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매수자의 신원을 신고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4제5항 신설),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직무 관여를 금지하는 사유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를 포함하며(안 제14조의11제1항제5호 신설),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밟는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의5제14항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해당 매수자의 신원을 같은 항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5제14항을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⑭ 제7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의 요지 등 해당 심사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제3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의11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제14조의5제7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제22조제10호 중 “제14조의4제6항”을 “제14조의4제7항”으로 한다.

제26조 중 “제14조의4제6항”을 “제14조의4제7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제14조의4제6항”을 “제14조의4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의4제6항”을 “제14조의4제7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14조의4제6항”을 “제14조의4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4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을 매각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 ⑥ (생략)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를 정하여 매각한 때에는 해당 매수자의 신원을 같은 항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u> <u>⑥ ·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u>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⑬ (생략) <u><신설></u> ⑭ (생략)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⑬ (현행과 같음) <u>⑭ 제7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의 요지 등 해당 심사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u> <u>⑮ (현행 제14항과 같음)</u>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4조의5를 준용한다.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공개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백지신탁한 주식이나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의 방법을 통하여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신설>

제14조의6(주식취득의 제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제7항-----
-----.

제14조의11(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14조의5제7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행정

② ~ ④ (생략)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 9. (생략) 10. 제14조(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1. ~ 21. (생략) 제26조(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	<u>쟁송절차가 종료되어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징계 등) ----- ----- -----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제14조의4제7항 ----- ----- ----- ----- 11. ~ 21. (현행과 같음) 제26조(출석거부의 죄) ----- ----- ----- <u>제14조의4제7항</u>----- ----- ----- -----
--	--

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제14조 (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 외의 재산등록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생략)

제30조(과태료) ① (생략)

--.

제28조(비밀누설의 죄) ① -----

---제14조의4제7항-----

② -----

-----제14조의4제7항-----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 2제2항 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u>제14조의4제6항</u>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 4. (생략) ③ ~ ⑤ (생략)	② ----- ----- -----. 1. ----- ----- -----<u>제14조의4제7항</u>----- ----- ----- -----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